

교육부는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2025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 일부 과목(수학·영어·정보)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제1원칙은 헌법상 이념과 맞닿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교육'으로, 각 주체는 교육 당사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주도적으로 활용·제어하게 할 것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학습데이터 수집·저장·관리, 가공을 위한 체계를 갖출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의 이용이 수반되는바,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유통·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생체 데이터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신원, (학습을 포함한) 활동, 위치, 의사소통, 감정, 건강,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 그 예로, 이러한 개인정보는 조합을 통해 특정 아동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끔 한다. 이에 플랫폼에 탑재될 학생 데이터 관리·보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정보를 제공받은 디지털교과서 제작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본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보충형 행정규칙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한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요컨대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표준지침,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23년 3월 14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권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그 동의의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드정보 제공, 본인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확인 절차는 다소 복잡한바, AI 디지털교과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조손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교육취약계층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져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또한 제기된다.

한편 같은 법 제23조의3(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에서도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가 채택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정보 수집을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의문이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자료로 학습을 할 수 있거나 시험을 응시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로서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배포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동의가 불가능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가 우려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정보주체인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거나,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예상된다.

또한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한 취지로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크패턴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개인정보 유통을 활성화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집적과 남용의 위험성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집적과 연계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이 비록 동의했더라도 시간이 흘러 자신의 학습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활발히 유통된 개인정보를 쉽게 삭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ai디지털교과서 입법안 자체에는 명시적인 정보 수집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정보 유출 막기 위해) 정보 수집 범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 판결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지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이외에 감정상태 등의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기술은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제작사 중심으로 개발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특히 데이터 공유 범위와 관리방법, 수집 데이터의 수준과 보유 기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데이터 활용·공유 관련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시 학습데이터를 사교육 서비스 제공 등 공교육 경쟁력 제고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되므로 이를 위해 개발사에게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데이터 클라우드를 외부 클라우드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축·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습데이터의 외부 이동은 제한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기준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1)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채택을 위한 검정심사 과정에서 목적 외 활용 금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고, (2) 심사 이후에도 준수사항의 위반이 확인될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등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검정절차 및 감독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사후 처분은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교육 관련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몇 억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 비식별화 조치 등 적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예측 가능하고 허용된 목적 범위에서 이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교육부는 개발사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등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친 트레이닝용 데이터로,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있고, 개인정보 비식별처리의 주체 역시 개발사이므로 가공 전로데이터 유출의 위험성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비롯한 데이터 수집·보관을 국가데이터센터(가칭)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비식별화된 정보를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공공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집 정보를 제한하는 것도 연계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습데이터셋에 준하는 정보를 수집할 것이 권고되고 있으므로 위 항목을 기준으로 볼 때, 학습에 대한 감정상태 등은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기술이므로 학생 감시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는바, 검토가 필요하다. 즉, 학습 결과물 중 꼭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로 저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규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